

# 수출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우리나라 수출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O/A 매입방식을 중심으로\*

박승락\*\*

- 
- I. 서론
  - II. O/A 매입방식에서의 무역금융과 수출신용보증
  - III. 현행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
  - IV. 수출보험 사기대출 예방을 위한 수출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 V. 결론
- 

주제어 : 수출보험사기, 수출신용보증제도, O/A 매입방식, 무역금융 사기대출

## I. 서론

수출보험은 수출관련 당사자인 수출기업이나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은행 앞으로 수출보험이나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수출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

\* 이 논문은 2016-2017 학년도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 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E-Mail: slpark@cju.ac.kr

경제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적 보험이다. 이러한 국민경제 기여라는 순 기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관련 약관상 보험자 면책에 해당되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당초 수출대금 미회수 등으로 인한 수출업자들의 손실보전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측면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경기 침체 지속으로 허위수출 등과 같은 보험계약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면책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책보험으로서 수출보험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면책 건수(면책 액)와 이의 신청 현황을 보면, 2011년 53건(170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에는 120건(3,904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의신청 건수도 2011년 10건에서 2015년 46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반해 이의 수용 현황은 2011년 10건에서 2015년 7건으로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보험자인 무역보험공사가 이의 수용을 상당히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46개 업체를 보험사기로 고소했으며, 46건에 대한 전체 피해액이 228억 4,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하고 수출업체들이 무역금융 대출을 받았는데도 업체들이 약속된 수출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국가경제에 큰 해를 끼치는 행위로 봐야 한다. 보험자인 무역보험공사는 약관에 근거하여 보상대상이 아닌 보험사고에 대해 면책처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건이 다수 발생함으로써 인하여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해당 기업 경영의 차질, 면책처분 불복에 따른 이의 제기의 증가, 무역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공신력의 저하, 은행의 금융성 보험종목 이용 기피(특히, 2015년 모뉴엘 면책처분 이후) 등의 제도운영의 부정적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고 무역보험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변화된 무역결제방식인 O/A매입에서 은행이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선적서류를 담보로 한 매입대출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이에 따른 허위수출과 수출채권 중복매입 및 무역금융 사기대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sup>2)</sup> 그 결과 은행

1) 무역보험공사가 동 기간 동안 고소한 사기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의지가 없이 허위수출로 매입대금을 유용한 사례가 25번으로 가장 많았고, 수출업체가 수출 후 결제하기로 등록한 계좌를 변경해 매입대금을 편취한 경우가 12번, 매입서류를 위조해 대금 편취한 것이 10번, 그리고 선적서류 위조로 수출물량을 과대 계상한 사례가 4번으로 조사되었다([www.breaknews.com](http://www.breaknews.com); 2016년 10월 11일).

2) 가장 최근에는 2017년 7월 관세청이 메이플세미컨덕터의 4천억 원대 반도체 수출사기사건을

들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불신함으로써 무역보험공사의 신용보증 제도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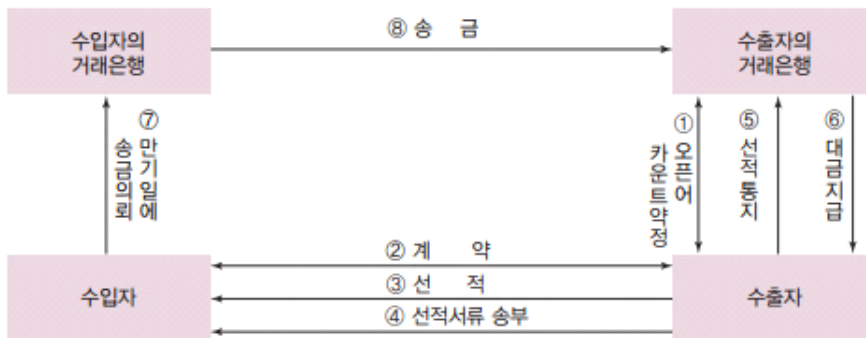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A 매입방식 무역금융 관련 수출보험 종목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신용보증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한국은행 무역금융대출 규정상 ‘적정용자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출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수출신용 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으로는 현재 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15개 보험(보증)종목(보험 13개, 보증 2개) 중 무역보험공사의 대표적 상품이자 전체 무역금융 지원실적의 90%를 차지하는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EFF)과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을 중심으로 문헌연구와 관련 법규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II. O/A 매입방식에서의 무역금융과 수출신용보증

### 1. Open Account(O/A) 매입

#### 1) O/A 결제방식의 의의

<그림 1> Open Account 결제방식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개정증보판, 2015, p. 168.

적발함으로써 이것이 ‘제2모뉴엘 사태’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17년 7월 19일자 MK뉴스).

O/A 결제방식은 일정기간 동안 수출입자간에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 건 별로 구매계약서나 구매주문서(PO: Purchase order) 등에 의하여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에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하면, 수입자는 물품매매계약서상의 결제조건에 따라 선적일 기준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출자가 지정한 외국환은행의 계좌(account)로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O/A 결제방식은 사후송금과 유사하나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출채권을 수출선적 직후에 거래은행에 매각하고 거래은행은 만기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는 대금결제 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로 본·지사 간 또는 고정 거래처간에 지속적으로 수출입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할 때마다 대금 결제하지 않고 3개월, 6개월 등 미리 정한 결산시기에 채권·채무를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는 상호계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계산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거래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O/A 결제방식은 수출자가 선적을 완료하고 수입자에게 선적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수출채권이 확정된다는 의미로서 “선적통지조건부 사후송금 결제방식”이라고도 한다.<sup>3)</sup> 이러한 특성에 의거하여 수출자는 선적완료 후 즉시 당해 외상수출채권을 거래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조기에 수출대금을 현금화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흔히 ‘O/A 매입(네고)’라고 부른다.

## 2) O/A 매입(O/A 외상수출채권 매입)<sup>4)</sup>

통상 O/A 거래는 수출상이 거래은행과 수출대금 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수입상으로부터는 결제대금을 약정된 채권양수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을 승낙 받아 거래하는 결제방식이다. 이 때 수출상은 물품을 선적하고 B/L 등 선적서류를 직접 수입상에게 보낸 뒤 약정은행에 선적서류 사본을 제출하고 수출대금을 미리 결제 받을 수 있다. 이 거래는 L/C거래 등에 비해 선적서류 취급 등의 시간과 금융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은행 측에서는 여신(대출) 행위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좋은 기업들에 한해 O/A 매입(Nego)을 허용하고 있다.

### (1) O/A 매입(Nego)의 특성

O/A 거래는 송금방식의 일종이므로 추심의 수단인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며, 선적서류의 원본은 수출상이 직접 수입상에게 송부하는 특징이 있다. O/A 거래의 이러한 특성으로 O/A Nego는 화환어음이나 선적서류 자체를 매입하는 거래가 될

3) 박광서·박은옥, 표준 무역실무, 한국무역협회, 2012, pp. 593~594.

4) 상계서, pp. 596~598.

수 없으며, 신용장이나 선하증권 등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순수한 외상수출채권만을 매입하는 거래이다.

O/A 거래에 의한 외상수출채권을 매입하는 은행은 신용장거래와 같이 개설은행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D/P 등과 같이 추심은행을 통하여 서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은행은 오로지 수입자의 신용에만 그 대금결제를 의존하여야 하며, 선적서류에 의한 담보권의 행사조차 불가능하다. 따라서 은행은 재무 상태나 신용도가 견실한 우량기업에 한하여 O/A 매입(Nego)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것이 바로 O/A 매입(Nego)이 일부 대기업들을 위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큰 이유이다.

## (2) O/A 매입(Nego) 업무의 개요

O/A거래는 수출입상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계속 거래와 관련한 기본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상이 매 건 별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에 의해 선적을 지시하면, 수출상은 그 지시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상에게 송부하며, 이에 따라 수입상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기본매매계약서상의 결제조건에 의하여 정해지는 만기일)에 수출상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O/A결제방식으로 수출하고, O/A 매입(Nego)을 통하여 그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려면, 먼저 거래은행과 당해 외상수출채권의 양수도에 관한 상담을 통하여 거래승인을 얻은 후, 이에 관한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채권의 양도에 관한 수입상의 서면동의를 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수입상으로 하여금 외상수출채권의 만기일에 매입은행이 지정한 계좌로 관리번호(매입 Ref. No.)를 명시하여 입금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은행은 수출상의 O/A 매입(Nego) 상담이 접수되면 수출입상의 신용도, 현금흐름, 채무상환 능력, 담보 제공여부,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여신거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소정의 조건이 충족되면 여신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O/A 매입(Nego)은 동일인 한도여신에 포함하여 운용된다.

## 2. O/A 매입방식에 따른 신용위험

무신용장 거래에 대한 매입은 추심매입과 O/A매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추심매입”이란 D/A, D/P 거래처럼 은행이 환어음 내지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은행 채널을 통해 수입자 앞 지급제시 혹은 인수 제시하는 추심 절차(collection)를 하는

것을 말한다. 추심매입은 O/A매입(선적서류를 담보로 하지 않고 O/A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것)하는 것 보다는 적어도 운송증권을 은행이 담보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더 안전하다.

O/A거래는 무신용장 방식 거래 중 추심거래를 제외한 기타 모든 외상거래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O/A,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송금방식), Net(순인도 방식), Jit(just-in-time, 즉시인도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포함한다. 단순외상방식 수출거래는 은행 간 송금관련 비용 외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아 비용측면에서 저렴한 결제방식이다. 따라서 최근 국제거래가 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하고, 수출기업과 수입자간 대량거래에 대한 공급사슬 단계 단순화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많이 활용 된다. 수입국 내에서 현지 인도하기에도 적합하여 현지법인의 수출에도 편리하다.

O/A 매입은 O/A거래를 대상으로 은행이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것으로, 운송물에 대한 선적서류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출자로부터 직접 수입자에게 인도된다는 점에서 추심매입과 구별된다. 이 경우 수출자는 선적서류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수입자에게 보낸 서류의 복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에 그친다. 결국 은행이 매입하는 대상은 추상적인 수출채권(export account receivable)이다.

수출자는 은행에게 수입자 앞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수입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수입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 입장에서 볼 때 환어음도 없고 선적서류도 없어 업무처리가 간편한 반면, 선적서류를 통한 물품확보 및 담보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위험한 거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은 수출자의 신용도가 확실한 경우 내지 수출자가 재산, 예금 등 담보물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가 있는 경우에 취급한다. 수입자의 채무 부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입자 앞 채권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매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입자 앞 물품인도증(POD, proof of delivery)내지 수입자의 채무인정서를 받고 취급하게 된다.

### 3. O/A 결제방식의 신용위험관리와 수출보험

O/A방식에서 초래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신용위험 관리와 무역금융 문제이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불확실한 매매당사자간의 신용을 은행이 개입하여 은행신용으로 전환함으로써 매매당사자들은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었고, 수출 후 즉시 신용장 네고로 무역금융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O/A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신용

장 이용에 따르는 복잡성과 거래비용의 문제는 감소하지만 신용위험관리와 금융 문제가 대두된다.

이러한 수출업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금융상품이 수출팩토링과 수출환어음매입이다. 그러나 비소구조건의 수출팩토링 형태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은행은 무역금융 외에 대금회수의 위험까지 인수하게 된다. 반면에 수출환어음매입이 일어나는 경우는 소구조건이므로 무역금융만 제공하는 데 그칠 수 있으나, 수입자의 대금 미결제로 수출업자의 재무상태도 악화된다면 역시 대금회수의 위험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은 수출보험을 이용한다.

이하에서는 수출팩토링과 수출환어음 매입에 따른 은행의 위험관리 수단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1) 수출팩토링과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수출팩토링은 O/A 방식에서 외상수출거래에 의해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업자가 상환청구권이 없는 조건(without recourse)으로 팩터(Factor)에게 매각하는 단기 무역금융상품이다. 수출업자는 수출팩토링을 이용함으로써 결제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무역금융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해야 하는 은행은 대금 미회수 위험 때문에 이러한 금융을 기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수출팩토링은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주로 취급하고 있다.

팩터는 자본건전성 유지 및 팩토링 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하여 수출업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데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이 담보로 제공되고 있고, 이 담보를 기반으로 무소구조건의 팩토링이 이루어진다. O/A결제 방식이 증가하면서 수출팩토링 수요가 늘어나고 나아가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에 대한 O/A 수요도 최근 급증해 왔다.<sup>5)</sup>

이 금융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은행은 수출채권의 매입이 실행되면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라 한다)에 이 매입사실을 통지한다. 또한 은행은 직접 통지하거나 수출업자로 하여금 수출채권매입사실을 수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징구한다. 만일 매입대금이 결제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은 무보에 사고발생 및 보험 청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 후 무보는 은행에 제출한 서류, 수출업자와 수입자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과 매입은행의 귀책여부 판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고조사가 완료되면 매입은행의 귀책여부를 심사해 보험금지급여부를 결정한다.

5)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의 이용 실적은 2011년 1조 1000억 원에서 2013년 3조 3,000억 원으로 2년 사이 3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소구조건의 외환매입은 IFRS 회계기준 하에서도 여전히 우발채무로 인식되므로 수출업자로서는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대금회수에 따르는 최종 리스크는 은행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은행은 수출보험을 이용하여 다시 보험자에게 재전가하는 구조이므로 수입자에 대한 무보의 철저한 신용조사가 필요하다.

## 2) 수출환어음 매입과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환어음의 매입은 수출신용장, D/A, D/P 등에 따라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은행이 추심 전에 매입함으로써 수출업자에게 선적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선적후금융이다. 이 제도에 의해 수출업자는 기한부조건으로 수출하더라도 수출대금을 신속히 회수함으로써 일람출급조건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sup>6)</sup>

O/A 결제방식에서는 원래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지만 은행은 수출환어음매입이라는 명칭으로 선적후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출팩토링과 달리 수입자의 대금 미결제시 매입 금융기관이 수출업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소구조건부이다. 즉 매입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입금이 안 되거나 만기일 이전이라도 은행이 입금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도처리 되어 수출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O/A 조건에서 수출환어음매입이 이루어질 경우 수출업자는 무역금융의 편익은 있으나 대금회수 위험은 여전히 남는다.

또한 무역금융을 제공한 은행도 소구조건부라 하더라도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대금을 상환해야 할 수출업자의 대금 미상환 위험에 노출된다. 은행은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무보가 제공하는 것이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이다. 즉,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한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담보로 연대 보증하는 구조이다.

이로써 은행은 무보가 보증한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담보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무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은행은 수출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무보는 수출환어음 매입에 따르는 위험의 최종 인수자가 되므로 그만큼 대상거래의 진위 및 수출업자의 신용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6) 구종순·허은숙, 무역대금결제론, 박영사, 2014, p. 374.



### 3) 수출보험의 담보위험

수출보험제도는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sup>7)</sup>

#### (1) 비상위험

수출보험에서 담보하는 비상위험이란 수입국에 관련된 위험으로 전쟁, 내란, 혁명, 환거래 제한 또는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인한 수출불능 또는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을 말한다.

####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수입업자에 관련된 위험으로 수입업자 또는 *L/C* 개설은행의 파산,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지체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있다.

- ①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의 발생(파산선고 이외에 기타 지급불능은 그 사실이 외국의 공적기관에 의하여 밝혀지거나 또는 우리나라 재외공적기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② 수출계약 상대방에 의한 수출물품의 인수거절 또는 지급불능
- ③ 수출계약 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
- ④ 수출계약 상대방의 지급지체

## 4. O/A 매입과 무역금융 및 무역보험에 관한 선행연구

O/A 방식 수출채권매입과 무역금융 및 무역보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병학 외1인(2006)은 무역대금 결제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수출보험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살핀 바 있다. 채진익(2007)은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거래방식이 송금방식을 포함한 무신용장방식위주로 지속적으로

7) 심의섭 외, 수출보험의 이해, 세창출판사, 2009, pp. 1~2.

전환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거래의 효율성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오픈 어카운트제도의 도입·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전자무역제도의 도입에 따른 전자무역플랫폼상의 오픈 어카운트제도의 효과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용재(2011)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무역보험제도 중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한 사기 사건들을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무역보험제도상의 문제점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근서(2011)는 한국은행 무역금융규정과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중심으로 무역금융상 적정용자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보완장치로서 수출신용보증서의 보증한도나 신용보증조건이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병규(2012)는 단기수출보험(EFF) 상품의 개발배경, 한도, 보험금지급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 상품(EFF)의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에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라공우(2013)와 최병규(2014)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제도의 한계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고지의무 제도의 현실화 및 몇 가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O/A거래에 주목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후)에서 수출대금 결제계좌를 지정하여 수출입자가 대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황우찬(2013)<sup>8)</sup>은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면책사례와 관련한 약관해설에서 은행의 서류검토의무의 일환으로 절차적 의무에 해당하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 논하면서 은행이 환어음 등에 의한 수출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류심사는 서류의 실질적인 진위여부가 아닌 형식적 심사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즉 서류가 갖추어야 할 정형적인 형식을 구비하고 있는지, 서류가 정당한 발행권자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위조나 변조된 흔적은 없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그 외에 그 서류의 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되는지 여부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박찬희(2015)는 모뉴엘 보험사기 사례분석을 통해 본 전자무역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회성 ‘일벌백계’나 ‘사기근절’ 차원에서의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및 감독기관 간 구체적인 정보교류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허은숙(2015)은 O/A방식 수출채권 매입은행의 절차적 서류검토의무를 중심으로 모뉴엘 사건 사례분석을 통하여 은행의 ‘상당한 주의’ 기준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특히 실제의 수출이행여부를 선박회사 정보시스템과 관세청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업무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8) 황우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면책사례와 은행의 주의의무”, *Trade Insurance Magazine*, 2013 7+8, pp. 72~79.

박근서(2016)는 현행 은행의 무역금융 실무나 무역보험이 O/A 결제방식으로서의 급격한 변화에 늦게 대응하고 있으며, 여전히 종전처럼 선적서류 징구 및 서류심사에 치중하는 업무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O/A거래에 대하여는 선적서류가 담보나 채권회수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O/A 수출 거래방식 변화에 맞게 무역금융도 수입자 앞 수출이행과 채권양도 확인 후 매입하는 것으로 변화가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채진익(2016)은 무역금융 사기방안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례분석을 통한 무역금융제도상의 주요 쟁점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방안으로 무역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무역보험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주로 수출보험의 국민경제 기여도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무역보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수출보험계약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수출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의무 및 무역보험 역선택 방지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무역금융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주로 수출보험사기 예방방안으로 매출채권 유동화 방식으로 포페이팅과 팩터링을 소개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본 연구가 주목하는 무신용장 방식의 O/A 방식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특히 O/A거래 방식이 본질적으로 수출채권매입으로서 선적서류를 담보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역금융 사기대출과 허위수출을 조장할 수 있어 무역보험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논의의 틀을 한국은행 무역금융규정상 ‘적정용자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석함으로써 O/A 매입 방식에 따른 무역금융과 수출보험 사기대출 위험에 대한 대안을 모색코자 하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

### Ⅲ. 현행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

#### 1. 한국은행 무역금융규정상 ‘적정용자의 원칙’

무역금융은 낮은 이자율로 수출이라는 특정경제활동에 국한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통칭한다.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공급된 자금이 부실 대출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무역금융을 건전한 수출지원제도로 운영하는 것이다. 무역금융의 범위는 국제무역활동(시장개척활동, 수출준비활동, 물품제조 등)

에 지원되는 모든 금융제공(대출, 지급보증, 지급확약 등)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출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이 수출물품의 선적시점(shipment)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무역금융 실무에서는 선적전(pre-shipment) 무역금융과 선적후(post-shipment) 무역금융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선적전 무역금융이라 함은 수출기업이 수출품을 선적하기 이전에 원자재의 조달 (국내조달 및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포함),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출 완제품의 국내구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말하며,) 원화대출과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선적후(post-shipment) 무역금융은 수출물품의 선적 이후에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수출과 관련된 금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위 환어음 등의 매입(negotiation)을 통해 자금을 대출하는 네고자금 대출, 팩터링, O/A 수출채권 매입금융 등 다양한 금융행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무역금융제도는 소위 “한국은행 무역금융”으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을 통하여 중소 수출기업들에게 선적전(후)의 금융을 제공한다. 수출기업은 전년도 혹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범위(융자한도)내에서 시중은행으로부터 금융을 제공받으며, 시중은행은 그 무역금융의 일정부분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재융자 받는 방식으로 금융 지원을 받는다. 이런 한국은행의 재융자 지원 때문에 시중 은행들은 수출기업에게 저리대출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무역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정책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역금융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시중은행이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2014년에 「총액 한도 대출」 및 「무역금융지원 한도」의 명칭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절차」로 변경하여 이에 근거하여 하위 세부규정인 “취급세칙”과 “취급절차”를 정하고 있다.<sup>9)</sup>

### 1) 한국은행 무역금융규정상 ‘적정융자의 원칙’

한국은행 무역금융규정 취급세칙 제4조(적정융자)는 “외국환은행은 무역금융 융자신청업체의 수출실적과 수출능력, 수출 또는 국내공급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과 기간 및 기타 수출관련금융 융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정수준의 무역금융이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외에도 기타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의 많은 규정들이 궁극적으로 적정융자가 이루어지도록 매우 상세

9) 박광서·황지현·주령커, “중소기업금융으로서 무역금융제도의 개선방안”, 무역상무연구 제7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7. 8, p. 132.

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sup>10)</sup>

무역금융제도의 정책적 고려사항은 용자된 자금이 수출에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수의 수출기업이 공평하게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취급세칙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내지 원칙으로서, “적정용자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은행 무역금융관련 규정상 그리고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상의 적정용자의 원칙을 각각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은행취급세칙은 (1) 용도별 용자금의 구분제공 (2) 용자한도, 용자금액, 용자시기와 용자기간 및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적정용자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은행은 무역금융 취급 시 자금용도를 구분 (용도별 금융, 예컨대 생산자금, 원자재 구매자금 및 완제품 구매자금으로 구분)하여 취하거나 혹은 자금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일괄하여 취급(포괄금융)할 수 있다. 무역금융 대출을 용도별 금융으로 할 것인지, 혹은 포괄금융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출은행이 결정할 문제이다.

용도별 금융을 제공하면, 수출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그 필요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면서도 그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용자금의 부정확한 사용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만, 이런 제한은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기업 활동의 탄력성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다.

반대로, 이러한 제한이 없는 포괄금융은 그만큼 탄력적 자금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은 있으나, 수출기업(차주)이 동 자금을 수출과 관련 없는 타 용도에 사용하고, 대출 만기에 고의로 상환 채무를 불이행하는 금융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각 취급은행이 수출기업의 신용도, 신뢰도, 구체적 자금소요, 수출거래구조, 수출기업의 생산방식, 자금유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용자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용도별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자금별로, 그리고 용도지정 없이 포괄금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기업별로 용자한도를 산정한다. 수출실적이 많고 적은가에 따라 수출기업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용자한도가 산정되므로, 인정 가능한 수출실적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수출실적이 실제와 다르게 파악되어 과다하게 인정되면, 그만큼 구체적인 대출금액이 커져 부실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취급세칙의 하위 규정인 취급절차 제7조는 수출실적 산정에 있어 각

10) 박근서, “무역금융상 적정용자의 원칙: 한국은행 무역금융규정과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12, pp. 67~72.

수출방식별로 인정되는 수출 실현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수출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공급)실적인 경우 당해 수출환어음이 매입된 때이며, 기타 수출계약서에 의한 공급인 경우에는 당해 수출대금이 입금된 때이다. 신용장 이외의 수출계약(예컨대, D/A 혹은 open account)인 경우 수출실적은 최종 대금지급이 완료된 경우, 즉 결제된 실적만 수출실적으로 인정한다. 무신용장 거래는 수출입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일 뿐이어서 수입자의 결제가 있어야 최종 지급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금이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2) 무역금융규정상 ‘적정용자의 원칙’ 구현의 한계

한국은행 무역금융 규정상의 ‘적정용자의 원칙’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융자금 구분, 용자한도, 수출실적 인정기준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에게 과다하거나 혹은 너무 과소한 대출이 있어 ‘적정용자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용자한도는 최대가능 한도이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수출실적만 존재한다면 가급적 관대하게 부여된다. 특히 일반 운전자금에 더하여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운전자금 대출한도보다는 총 자금 규모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한편, 수출실적 자체가 전년도 수출실적에 근거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업체의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한도가 운영되기 어렵다. 예컨대, 전년도 수출을 많이 한 기업이 올해에는 중요한 수입자와의 거래가 단절되어 수출계획 물량이 매우 적게 된 경우, 단순히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았다고 하여 무역금융한도를 그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 경우 무역금융에 의해 제공된 과다한 유동성은 어떤 경우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적기준 무역금융은 특히 신생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 예컨대 특정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신생 수출기업이 R&D 등 초기투자가 많았으나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비한 경우, 비록 신용 있는 수입자와의 거래가 체결되었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자한도는 매우 적게 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무역금융 자체 제도에 의한 적정용자는 어렵다는 기본적 인식하에, 타 제도, 특히 무역금융 대출의 상환 채무를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제도가 적정용자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수출신용보증서 발행과 ‘적정응자의 원칙’ 구현<sup>11)</sup>

수출신용보증제도(export credit guarantee)란 물적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금융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보증기관)가 물적 담보 대신 그 채무이행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수출기업이 직접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무역보험공사가 대출 신청을 한 수출업체 경영진의 경영능력, 기업의 기술력, 기업의 수출능력 등을 검토한 후 충분한 수출 능력과 대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보증서를 대출은행 앞으로 발행함으로써, 수출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지급보증 포함)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의미한다.

수출신용보증은 담보하는 신용보증대상 대출은 수출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거의 모든 무역금융대출을 포괄한다. 수출신용보증약관 제2조는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은행 무역금융 뿐만 아니라,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기타 기관의 수출진흥지원자금 대출을 포함하고 있다. 수출신용보증은 그 보증채무의 분담방식, 수출기업의 특성, 그리고 보증서의 발급방식 등 개별 수출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세부종목을 현재 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 1) 수출기업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받기로 한 경우, 무역보험공사는 첫 단계 기초조사로 수출기업 신용평가를 한다. 수출기업 신용조사는 정형화된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수출기업의 재무상황, 비재무적 요소 및 대표자의 경영능력 등 요소를 평가하여 등급평가를 하게 된다. 재무적 신용평가는 주로 개별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등에 대한 재무평가를 하게 된다.

신용등급 평가 후 청약서나 기타 수출실적 증빙 등을 심사하여 구체인 보증심사를 하게 되는 바, 심사사항은 동일 수출기업에 대하여 부여되는 보증총액(동일기업에 대하여 여러 보증서가 발행된 경우 그 합계액)의 대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수출실적, 금융기관 거래상황, 수출거래 금액 등 심사를 통하여 수출기업의 신용도가 적격이고 수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증서를 발행한다.

한편, 보증방법의 경우도 신용보증한도와 보증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적으

11) 상계 논문, pp. 72~77.

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회전보증과 보증서에 특별히 기재된 특정 수출거래 혹은 특정 자금과 관련하여 일회성으로 그 채무를 보증하는 개별보증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2) 보증한도 설정을 통한 적정용자의 구현

수출신용보증서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한도인 신용보증 한도는 수출실적 혹은 확정된 특정 수출계약서상의 수출액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신용보증서상 보증한도도 필요한 만큼 그리고 업체의 능력에 상응하는 적정용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수출실적과 수출기업 신용도에 근거하여 정해진다.

수출신용보증 상 보증한도의 산정요소는 수출실적, 기 부여된 타기관의 무역금융한도, 수출기업의 신용등급이다. 즉, 보증가능 한도는 전년도 수출실적에 일정비율을 곱하고, 여기서 타 기관 무역금융한도(예컨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상 정해진 보증한도)를 제외한 금액에서 수출기업 신용등급 평가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며, 동 보증가능한도 범위 내에서 담당자가 보증한도를 부여한다. 따라서 신용보증 가능한도와 수출실적 및 수출기업 신용등급은 정비례관계이며, 타 기관에서 이미 부여하고 있는 금융과 무역금융 한도는 반비례관계이다. 한편, 수출유발효과가 더 큰 제조업에 대하여 일정부분 더 많은 한도가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보증가능 한도 책정을 위해 계량적, 비계량적 사항을 모두 검토하는 데, 비계량적 검토사항으로는 우선 수출기업의 동 업계 평판이 있다. 한편, 그 수출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의 상황, 원자재 수급상황, 평균적인 수출거래 결제조건, 품질 및 기술수준, 과도한 외상매출채권 혹은 미수금 등을 고려하여 보증 한도를 정한다.<sup>12)</sup>

무역금융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수출신용보증제도는 무역금융대출에 대해 은행 앞 책임한도인 보증한도를 부여하고 보증조건을 보증서에 기재함으로써 중첩적으로 ‘적정용자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 즉, 수출기업의 신용조사 및 수출거래 등 제 조건 심사를 통해 신용보증한도 및 용자의 종류 등을 포함한 신용보증조건을 수출신용보증서에 부여하고 이를 은행이 준수하도록 한다. 은행이 동 신용보증조건상의 용자조건을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동 신용

12) 특정 수출기업이나 수출거래의 경우 정책 지원필요성이 커서 보증한도의 특별책정 우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출유관기관(금융기관 포함)등에서 선정된 유망기업 또는 유망 선진기술기업인 경우에는 한도책정 시 우대할 수 있다. 한편, 기업규모, 수출실적 및 기타 지원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보증서가 이미 발행되어 보증기간 중인 경우라도, 수출기업의 수출실적이 현저히 증가하다던가, 혹은 신규 수출계약의 체결 등으로 자금소요가 증가하여 신용보증가능한도의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보증한도가 증액될 수 있다.



보증조건 준수는 은행의 자의적 대출 남용을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적정용자가 이루어지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신용장기준 금융의 경우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과의 연계부보를 통해 취급 은행이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거래 위험, 즉 수출계약 자체의 위험성 내지 수입자 신용위험까지도 감안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부실대출의 가능성을 완화시켜 궁극으로 적정용자를 더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 3) 수출보험제도 활용을 통한 무역금융 ‘적정용자의 원칙’ 구현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수출보험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여 수출계약관계를 더 안전하게 함으로써 무역금융의 회수가능성을 높여 적정용자가 달성되게 할 수 있다. 신용장 기준 무역금융이나 수출신용보증 개별보증은 개별 수출신용장 혹은 D/A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동 수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무역금융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기초가 되는 신용장이 신뢰할 수 없는 외국은행으로부터 발행되었다거나, 신용도가 높지 않은 수입자와의 D/A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O/A 대금결제 방식의 경우, 동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은행은 무역금융 대출을 꺼리게 될 것이며, 적정용자의 공급이라는 무역금융 대출원칙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거래에 대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이나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부보를 통해 수입자나 개설은행의 대금 미지급 위험을 사전에 보험커버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게 해서 신용보완을 하면 수출계약 자체의 위험이 줄게 되어 대출취급 은행은 무역금융 대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즉 신용장기준 무역금융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동 무역금융에 대한 신용보증뿐만 아니라, 기초가 되는 수출계약 상의 위험도 사전에 커버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무역금융 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수입자 혹은 수입국 위험은 일반 시중은행이 독자적으로 커버하기 어려운 분야로,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제도로 커버할 수 있다.<sup>13)</sup>

### 4) ‘적정용자의 원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엄격한 면책사유 규정

수출기업이 대출채무의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는 원칙적으로 무역금융 취급은행에 보증 채무를 이행(보증금 지급)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신용보증약관이

13) 이런 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해외위험을 담보하고 담보된 거래에 근거하여 무역금융과 매입 금융을 연계시켜 지원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존재가치가 인정된다. 해외위험(수입자 신용위험)과 국내위험(수출자 신용위험)을 일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수출보험 약관상 명시된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공사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 “면책사유”의 존재 의미는 대출취급은행이 신용보증 부 무역금융 대출시 무역금융 규정 혹은 신용보증약관이나 특약상의 각종 요건을 엄격히 따르도록 하여, 수출 진흥이라는 무역금융 당초의 목적에 충실하고 적정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간접적 강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 5) 무역보험공사(수출보험자)의 면책사유

수출보험은 담보위험의 특성상 합리적 예측이 곤란하고 당사자 간의 공모 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커서 엄격한 면책사유 규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약관상의 면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 이행과정에서 수출업자의 귀책이 있는 주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1) 보험약관상 규정에 의한 면책사유

이하는 보험약관상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첫째, 취급은행이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면책사유이다.<sup>14)</sup> 예컨대, 신용보증서상 기재된 대출금의 종류가 원자재 자금으로 한정되어 내국신용장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은행이 생산자금으로 직접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경우에는 면책이 된다. “신용보증조건”이란 발행된 보증서의 앞면에 기재된 신용보증부 대출금 종류, 신용보증한도, 신용보증서 유효기간 및 특약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한다. 이는 은행이나 수출기업이 보증서의 문면 상 기재내용을 읽어봄으로써 명백히 알 수 있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둘째, 은행이 신용보증부 대출금을 신용보증부 대출 이외의 기존 채권에 상환·충당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sup>15)</sup> 예를 들어 이미 공급이 완료된 물품에 대한 외상구매 (타 대출건) 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취급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 수출과 관련이 없는 대출인 것이며, 한편 부당하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남용하여 정책적 편의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행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sup>16)</sup>

한편, 은행이 신용보증사고(무역금융대출 미상환 등) 발생 후 무역보험공사의

14) 수출신용보증(선적진)약관 제6조 제1호.

15) 수출신용보증(선적진)약관 제6조 제2호.

16)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면책사례집, 2009, pp. 48~49.

동의 없이 신용보증부 대출과 관련된 물적, 인적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였거나 포기한 경우 그로 인해 구상할 수 없게 된 금액에 대하여도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sup>17)</sup> 수출신용보증서가 있다 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위해 이미 제공되어 있던 담보(예, 예금, 부동산 등)를 임의로 포기하면, 이는 취급은행이 부당하게 대출을 부실화 하는 행위이며, 향후 공사가 채권구상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실행된 무역금융 대출이 ‘적정한 용자’로서 유지되기 해서는 대출 기간 동안 적정한 담보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은행의 고의적인 담보 부실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2) 수출보험자의 주요 면책사유(General exclusions)<sup>18)</sup>

다음은 수출보험자의 일반적인 주요 면책사유(General exclusions)이다.

① 연속수출로 인한 손실

수출 건에 대해 결제일이 도래했으나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향후 수출 건에 대한 수입업자의 대금지급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수출업자의 귀책사유

물품하자나 선적기일 미준수, 계약조건 위배 등 수출계약 이행과정에서 수출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수입업자가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③ 물품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실

④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

⑤ 대금지급 채무의 면제나 경감을 약정한 경우

⑥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인수한도를 책정 받고 수출을 하였으나 수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수출보험은 수출계약과 관련한 수출물품의 대금청구권을 담보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출통지한 내용이 실제 수출거래의 내용과 다르거나 수출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출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⑧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보험자 면책 세부 사유

다음의 <표 1>과 <표 2>는 무역보험공사에서 2년(2014년-2015년) 동안 면책을 결정된 구체적인 세부사유들과 기업규모별 면책사유들을 나타내고 있다.

17) 수출신용보증(선적전)약관 제6조 제6호.

18) 구종순·허은숙, 전게서, pp. 397~400.

<표 1> 무역보험공사(보험자) 면책 세부 사유

면책사유 (대분류)	세부 사유
고의 과실	-허위수출/ 수출제품 하자(품질, 규격 등)/ 수출대금 편취 -계약서상 선적기한을 초과하여 선적하여 납기지연으로 클레임 발생 -수출서류 문제(수입자 대표 계약사실 부인, 수출계약서 서명자는 대표권이 없었음) -계약서 조항 미 이행/ 수출대금 선수금 수령/ 수입자 R등급 등록 인지 후 추가 선적/ 수출입업자 간 채무이행 청구소송 당시 채권자료 부재 -수출자의 일방적 공급 중단/ 운송사(수출대리인)가 수출자 동의 없이 원본 B/L을 수입자 앞 인도/ 단가 부풀림/ 전액결제로 손실액 없음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실
의무 위반	-사고발생 통지 지연/ 권리보전의무 해태로 인한 손실 가중 -손실방지 경감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한도청약 시 수입자앞 미회수 채권내역 미고지)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수출대금 편취)
수출채권 감소 및 훼손	-클레임 인정 및 송금, 채무면제 -사고금액이 법정 관리인이 인정한 채무금액을 초과함 -전액결제/ 자료제출 미비/ 수입자 앞 마케팅비용 미지급 -이전 선적 건에 대해 발생된 비용 미지급 -수출업자 법정관리인과 사고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인정키로 합의함/ 실제 선적금액이 Invoice금액보다 낮음
신용보증조건 위반	-수출계약서, 선적서류 미 징구/ 선적서류 하자(발행인 서명, 날인 누락) -수입업자의 수출물품 인수 증빙 미 징구/ 선 일자B/L 매입/ 적하보험증권 미 징구 등 -입금계좌를 당 행 관리계좌로 미 지정/ 자기자금 상환에 대한 사고 미 통지/ 결제계좌지정 관리의무 위반
매입 시 주의의무 위반	-자기자금 상환사유 미 파악 및 결제계좌 관리 태만, 선적서류 간 불일치 미확인 -입금계좌를 당 행 관리계좌로 미 지정/ 자기자금상환에 대한 사고 미 통지 -수입업자의 수출물품 인수 증빙 미 징구/ 선일자B/L 매입 -적하보험증권 미 징구 등/ 수출계약서 미 징구 -하자 선적서류 매입/ 중계무역
(보험, 보증) 적용대상 거래	-위탁가공무역이 아닌 중계무역/ 수출입업자 간 계약서 부존재 -선수금거래에 대한 보증 부 대출/ 위탁가공무역 증빙 미제출 -허위수출/ 결제기간 1년 초과/ 클레임으로 인한 감액/ 국내거래
보험, 보증 관계 불성립	-증권 상의 수입업자와 다른 수입업자 앞 거래/ 수입업자 R등급 등록 이후 추가 인도 -보증관계의 성립/ 보험관계(계약)의 성립/ 보험관계의 불성립
보험계약 해지	-수출입업자 간 계약서 부존재 -수출업자는 위조된 L/C개설은행의 재무자료를 공사에 제출할 당시 위조된 사실 불고지 -클레임 제기시점이 선적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전에 알릴의무 이행하지 않음 -청약 당시 만기도래 미결제 미고지에 따른 보험관계 해지사유 해당, 사고건 수출통지누락 -대행 수입업자 앞 부보 건으로 실수입업자 미고지

면책사유 (대분류)	세부 사유
증권 상 특약 사항 위반	-수입업자의 수출물품 인수증빙 미 징구 -선 일자B/L 매입/ 적하보험증권 미 징구 등 -보증인은 서류하자를 이유로 정당한 보증채무 이행 거절
무신용장 방식 계약 주요 사항 위반	-POD 미 징구 등/ 하자 선적서류 매입/ 선수금조건 위반 -계약서상과 소 선적 허용조건을 초과하여 선적/ 이의신청 전 부 수용
기 타	-전액 회수/수입국 위험 미 확보 -신용장 개설은행의 정당한 하자 제기 -선하증권과 상업송장 상 일자 상이/원산지증명서 상 물품명세, 일자 상이 -수입업자 앞 수출채권이 매입으로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인수되지 않았음 에도 추가로 신용보증 부 대출 실행

\*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자료.

<표 2> 기업 규모별 면책 사유(2014년-2015년)

면책 사유	전체 및 기업 규모 별 면책 건 수
보험계약자의 고의 과실	73(중소기업 66, 중견기업 4, 대기업 3)
연속 수출	45(중소기업 31, 중견기업 4, 대기업 10)
수출채권 감소, 훼손 등	28(중소기업 18, 중견기업 2, 대기업 8)
신용보증조건 위반	21(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 대기업 0)
보상한도(책임금액) 초과	20(중소기업 12, 중견기업 1, 대기업 7)
수출업자· 보험계약자의 의무 위반	20(중소기업 12, 중견기업 6, 대기업 2)
(매입 시)주의의무 위반(해태)	20(중소기업 19, 중견기업 1, 대기업 0)
(보험, 보증)적용대상 거래	19(중소기업 16, 중견기업 1, 대기업 2)
보험/ 보증관계 불성립(성립)	19(중소기업 14, 중견기업 2, 대기업 3)
변제충당	9(중소기업 7, 중견기업 1, 대기업 1)
보험계약 해지	7(중소기업 6, 중견기업 4, 대기업 1)
보험증권 상 특약사항 위반	3(중소기업 0, 중견기업 2, 대기업 1)
보험금 청구권 시효소멸(소멸시효 완성)	3(중소기업 1, 중견기업 1, 대기업 1)
무신용장 방식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 위반	3(중소기업 3, 중견기업 0, 대기업 0)
기타 지급사유의 해소	3(중소기업 0, 중견기업 0, 대기업 3)
수입업자의 신용상태 악화 인지 후 수출거래	2(중소기업 2, 중견기업 0, 대기업 0)
담보하는 위험	1(중소기업 1, 중견기업 0, 대기업 0)
신용장방식 등의 수출거래의 정의에 위배되는 수출 거래	1(중소기업 1, 중견기업 0, 대기업 0)
신용보증 부 대출실행 금지	1(중소기업 1, 중견기업 0, 대기업 0)

\*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자료.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무역보험공사는 현재 금융성 수출보험 품목인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과 단기수출보험(EFF)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은 물론 경미한 과실까지도 예외 없이 면책하는 엄격한 보험자 “면책 세부 사유”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별 면책사유를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의과실, 연속 수출<sup>19)</sup>, 수출채권 감소, 훼손 등, 신용보증조건 위반, 수출업자, 보험계약자의 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해태), 보험/보증관계 불성립(성립), 변제충당 등의 사유에서 면책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연속 수출, 수출채권 감소, 훼손 등, 보상한도(책임금액) 초과 등의 면책사유가 많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업자·보험계약자의 의무 위반, 연속 수출, 보험계약자의 고의 과실 등에서 면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 IV. 수출보험 사기대출 예방을 위한 수출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 1. 서류심사 중심의 신용보증제도 개선

###### 1) 수출이행 및 수출채권 확인 중심의 신용보증제도 확립

무역거래에서의 대금지급과 국제운송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채택한 서류거래의 원칙은 실제의 수출은 없이 서류상으로만 수출한 것처럼 꾸민 허위수출에 의하여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O/A 방식과 같은 무신용장 거래방식으로의 급격한 변화는 신용장 거래처럼 수입국 은행이 확실히 지급할 것이라는 보장(assurance of payment)이라는 안전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기거래를 담보하는 무역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기거래를 담보하려는 시도는 수출보험이나 수출신용보증서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수출이행은 수출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므로 은행은 수출이행과 수출채권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은 중요한 확인사항이 된다. 또한 수출보험에 있어서 수입자의 대금 미지급이 보험사고이므로 이 때 수출이 미 이행 상태라면, 수입자 앞 대금청구권이 없게 되어 원칙적으로 담보할 위험 자체가 없는 상태로 봐야 한다.

19) 주요 면책사항 중 연속수출로 인한 손실에 대해 수출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이유는 이전 수출거래의 대금결제가 최초 결제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지체되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사고발생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정홍주 외, 무역리스크관리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p. 290).

추심방식 거래에 대한 매입대출의 경우엔 물품과 운송증권을 은행이 보유하므로 그것을 담보로 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하다. O/A 매입인 경우에는 그 실질이 운송물품이나 운송증권 확보로 담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권양도이기 때문에 수출이행이 없는 경우엔 채권도 없어 은행의 손해는 극심할 수 있다. 결국 이 경우에는 선적서류나 수출서류의 확보와 심사보다는 그 서류로서 수출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더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곤란하다면 수입자의 채무 인정서(acknowledgement of debt) 확보로 은행의 금융제공 시기를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이다.

우리나라 매입실무에서 O/A 거래는 환어음이 생략되고 선적서류는 사본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추심거래를 간소화한 방식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O/A거래는 선하증권 등 권리증권이 물리적으로 수입자에게 넘어 갔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증권의 기재사항(선적사실)에 의존하기 보다는 수입자로부터 채무를 인정받는 것이 채권확보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 수입자의 채무인정을 발효요건으로 하거나, 적어도 수입자 앞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인도증빙(proof of delivery)이 있는 경우에 한해 매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sup>20)</sup>

화환어음 매입처럼 선적서류 발급사실만 보고 매입해버리면 은행은 “미성숙” 채권 내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수출채권을 양수하는 것이 된다. 만약 수출자가 허위로 선적한 것처럼 꾸민 선적서류를 매입시키면 은행의 매입채권은 부실채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이 팩터링을 통하여 새로운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한 후에 매입하면 은행은 직접 수입자 앞 채권청구가 가능해 진다. 무역보험에 있어서도 은행이 수출채권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면 채권성립을 문제 삼아 보험의 목적인 채권이 없다는 항변 내지 면책 위험이 상당부분 제거될 수 있다.

## 2) 수출신용보증계약과 수출신용보증관계 성립시기의 구분

수출신용보증관계는 ① 보증청약, ② 보증 승낙 ③ 신용보증계약 성립 ④ 보증서 발행, ⑤ 수출 또는 물품인도, ⑥ 은행의 수출채권(선적서류) 매입, ⑦ 신용보증관계 성립, ⑧ 보증부 대출실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은행이 수출자와 수입자를 특정해서 필요한 보험인수 한도(credit limits)를 신청하면,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신용도를 조사하여 내부기준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보증한도액을 결정한 후 은행을 수취인(상대방)으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sup>21)</sup>

20) 박근서, “무역금융과 수출신용보증에 있어서 매입대출과 수출채권 매입”, 무역보험연구 제 17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3, p. 41.

21) 수출신용보험에 있어서 신용한도(credit limits)설정은 보편적인 실무이다. 미국 수출입은행도

그런데 무역보험공사의 신용보증서 발행이 바로 보증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즉, 신용보증서 발행은 단지 은행이 미래에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수출채권(선적서류)을 매입하면 신용한도 내 보증관계를 성립시키겠다는 예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보증관계의 성립은 동 보증서에 부합하게 실제 수출이 있고, 동 수출에 대하여 은행이 매입방식으로 대출한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sup>22)</sup> 약관 규정과 동일하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보증계약의 성립시점과 구체적 보증관계의 성립시점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sup>23)</sup> 판례는 수출보험증권에 관해 규율하였지만, 증권 발행의 예정보험적 성격과 실제 보험(보증관계)의 사후적 성립은 수출신용보증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sup>24)</sup>

### 3) 중복매입방지를 위한 관세청과 은행 간 'O/A결제시스템' 도입

관세청과 은행들은 수출기업의 중복매입신청을 통한 무역금융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O/A결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수출이행 진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O/A결제시스템은 수출기업이 여러 은행에 매입신청을 해 해외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는 무역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O/A거래는 수출입 시 수시로 현금을 주고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의 거래를 모아서 그 대차를 청산하는 포괄계약 방식으로서 수출채권의 중복매입신청으로 인한 무역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sup>25)</sup> 관세청은 금융권과 협약을 통해 각각 보유한 수출입 통관정보와 무역금융대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적발하고 사기대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 등 실물정보와 외환거래 내역 등 금융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허위수출 및 사기대출 범죄를 단속할 수 있다.

단기보험에 있어서 신용한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Louis G. Guadagnoli, *A Practical Guide to Export Financing and Risk Management*, IV-11, Kogan Page, 2000).

22) 수출신용보증(선적후)약관 제4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2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8030 판결 참조. 이 판결은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특약에 대한 것이나, 보증서 발행의 법적 성질 및 개별 보증관계의 성립시기 등은 수출신용보증과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24) 구체적 개별 보험관계는 수출기업이 실제로 수출(계약에 따른 물품 선적 혹은 인도)을 한 후 은행이 동 수출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심사 후 매입하고 공사에 그 매입통지를 하면 매입일로 소급하여 성립한다. 즉, 보증관계의 성립 시점은 매입 통지시기가 아니라 매입일이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약관 제5조).

25) 대표적 중복매입신청 무역사기가 2014년 발생한 모뉴엘 사건이다. 로봇청소기 등을 제조·판매하던 중소 가전업체 모뉴엘은 한국에서 수출한 완제품을 현지에서 분해, 부품을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무보의 보증을 받아 은행대출을 받은 결과, 금융회사들에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히는 무역사기를 일으켰다.



#### 4) 블록체인(Blockchain)기술 기반 무역금융 대출 시스템 도입

최근 무역금융에서 송장 사기로 큰 피해를 입은 글로벌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재발방지에 나서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sup>26)</sup> 은행들끼리 송장 정보의 표준을 만들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무역금융 사기 피해를 막자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통해 금융과 블록체인 간의 결합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4월 중국 상하이 보험거래소의 주도하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보험회사 간 신용거래 시범프로젝트가 성공하여 중국 보험회사들의 블록체인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금융사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송금·결제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터드은행은 싱가포르 DBS 그룹과 협력하여 전자 송장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미국 BofA와 Citi, 영국 HSBC도 이러한 체제 구축을 검토 중에 있다. 영국의 Barclays는 최근 블록체인을 적용한 무역금융 시스템에 한 발 더 다가가,<sup>27)</sup> 2016년 9월 이스라엘 스타트업 웨이브(WAV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에 신용장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글로벌 낙농기업인 (주)오르누아가 10만 달러에 달하는 치즈와 버터를 무역회사인 세이셀에 수출하는 과정에 활용되었으며, 블록체인에 신용장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보장되었다. 이탈리아 금융그룹 UniCredit은 2016년 초 재무적 관점에서 바라본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프로그램에 관한 기술 보고서<sup>28)</sup>를 성공적으로 발표했다.

기존의 전통적 무역거래 절차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완전히 바뀌게 된다.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블록체인 상에 계약을 올려놓게 되면 모든 계약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계약조항은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이후에 물품이 특정 지점을 지나게 되면 블록체인이 반영된 스마트계약이 실행되어 대금이 자동적으로 송신자의 은행에서 수신자의 은행으로 전달된다.

우리나라 무역금융업계에서도 향후 O/A 매입방식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무역금융 대출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sup>29)</sup> 최근 국내외 여러 금융기관 및 보험업계에서는 블록체인을 접목시킨 무역금융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sup>30)</sup> 블록체인은 온라인 공개장부로서 거래 내용이

26) "Fraud in \$4 Trillion Trade Finance Has Banks Turning Digital", Bloomberg, 2016.5.23.

27) Pete Rizzo, "Barclays Completes Blockchain Trade Finance Transaction", *Coindesk*, 2016.9.7.

28) UniCredit, "Blockchain Technology and Applications from a Financial Perspective", *Technical Report*, Version 1.0, 2016.1.26.

29) 김재성·임성철, "국제 무역거래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7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7. 8, p. 145.

30) 서정호·이대기·최공필,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7. 1, pp.

변경될 때마다 모든 장부가 갱신된다. 따라서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무역시장에서 거래 내용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의 거래 장부를 동시에 해킹해야 하므로 사실상 조작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다.

## 2. 엄격한 무역보험공사 면책조항의 개선

### 1) 약관 상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면책조항 설명의무 부과

수출기업이 대출채무의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는 원칙적으로 무역금융 취급은행에 보증 채무를 이행(보증금 지급)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신용보증약관이나 수출보험 약관상에 명시된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공사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

무역보험공사는 현재 금융성 수출보험 품목인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과 단기수출보험(EFF)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은 물론 경미한 과실까지도 예외 없이 면책하는 엄격한 보험자 “면책사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계약자에게 엄격한 ‘보험자 면책조항’의 존재 의미는 무역금융 대출취급은행이 신용보증부 무역금융 대출시 무역금융 규정 혹은 신용보증약관이나 특약상의 각종 요건을 ‘적정용자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따르도록 하여, 당초의 무역금융 목적에 충실하고 적정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간접적 강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조그마한 과실까지도 무역보험공사가 면책처분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엄격한 면책조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모뉴엘 사태의 배상책임을 놓고 은행과 무보간의 소송전에서 쟁점이 된 것은 허위 수출채권 매입의 경우 무보의 면책여부이었다.<sup>31)</sup> 면책사유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보상해야 된다는 은행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면책사유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데, 무보가 면책사유로 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출업체의 허위거래에 따른 위험이 담보위험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다.

앞 장의 <표 2>에서 기업규모별 면책사유를 보면, 보험계약자의 고의과실이나 연속 수출 사유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면책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

52~56.

31) 은행이 무역보험공사와 체결한 단기수출보험약관 상의 면책사유에 수출거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를 넣지 않아 면책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위 수출채권 매입의 경우에도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 은행 측 변호인인 (주)김앤장의 주장이었다.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고의 과실 중 허위수출이나 수출대금 편취 등과 같은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인근국가인 일본 및 중국 ECA 기관의 면책조항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무역보험공사의 면책조항 개선방안 모색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보험약관 상에 주요 면책사유와 함께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의 의무와 면책에 관한 사항’을 상품설명과 약관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시하고 있는 일본 NEXI (Nippon Export & Investment Insurance)의 면책관련 약관 조항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 SINISURE의 ‘수출신용보험 종합보험약관’상 주요 면책사유(제3조) 규정<sup>32)</sup>에서처럼 ‘보험계약자의 사기나 파산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면책을 명문화함으로써, 허위수출로 인한 무역금융 사기대출이나 수출보험사기로 인한 비용소모적인 법정싸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약관 상 은행의 절차적 주의의무 규정 명시

한국은행의 ‘적정용자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공사는 보다 엄격한 면책조항을 운영하고 있고, 서류심사 위주의 신용보증제도 운용으로 수출이행 및 수출채권 확인업무에 소홀할 수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무신용장방식의 O/A거래에서는 청산거래의 포괄계약 특성상 허위수출채권 매입으로 인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물론 무역보험공사 자체의 신용조사 기능의 대폭적 강화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O/A 수출채권 매입은행의 절차적 주의의무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보험약관상 은행의 절차적 주의의무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은행의 절차적 주의의무는 수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은 관련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출계약서상에 나타나는 계약당사자의 존재, 송금결제계좌의 존재, 결제경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sup>33)</sup>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면밀히 검토해서 구매주문서, 결제계좌의 송금구조 등 수출계약의 실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약관 상에 결제계좌를 무역금융취급은행의 외화입금계좌로 한정하게 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주의의무를 부

32) (제3조)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계약 위반, 사기 및 기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보험계약자 대리인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3) 허은숙, “O/A방식 수출채권 매입은행의 서류검토의무”, 관세학회지 제16권 4호, 한국관세학회, 2015. 12. pp. 273~275.

과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이행의 확인을 위한 수출신고필증의 근거인 관세청 정보시스템, 선사의 화물정보추적시스템을 확인하도록 약관상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뉴엘 사건도 은행들이 보다 신중하고 엄밀하게 검토했다면 서류상의 많은 하자를 발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고, 실제 선적여부를 수출통관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했다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 절차적 주의의무는 특히 '수출신고필증'의 확인에 중점을 두게 해야 한다.

## V. 결 론

신용장거래와는 달리 O/A거래에서는 수출서류 중 특히 운송서류는 수입자에게 직송되어 더 이상 선적서류를 담보로 한 매입대출은 그 담보력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역금융 실무나 무역보험 업무처리는 기존의 신용장 거래나 추심거래방식에서 적절했던 선적서류 심사 및 담보활용에 여전히 치중하는 업무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다. 수출입자간 O/A거래실무에서 은행은 종전처럼 선적서류를 담보로 확보하여 매입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실제로는 수입자 앞 수출이행 내지 수출채권을 확인을 누락하는 무역금융 실무관행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그 결과 O/A매입 방식에 따른 허위 수출채권매입으로 무역금융 사기대출과 이로 인한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 전체의 신뢰성에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대금결제가 신용장 방식에서 무신용장 방식의 O/A 결제방식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서 기존의 신용장 거래 중심의 결제방법이 보장해주던 은행을 통한 원본서류의 확보 및 수출서류 심사 중심의 무역금융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무역금융 사기대출에 쉽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게 됨을 밝히고 있다. O/A 결제방식의 경우 선적서류는 단지 사본만 징구하므로 서류가 위·변조되고 실제 수출은 없는 경우,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무역금융의 적정서류심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A 거래에서 원본 선적서류가 담보나 채권회수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은행은 수입자 앞 수출이행 확인이 무역금융 사기대출이나 수출보험사기 예방에 보다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A거래는 선하증권 등 권리증권이 물리적으로 수입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증권의 기재사항(선적사실)에 의존하기 보다는 수입자로부터 채무를 인정받는 것이 채권확보 측면에서 더 적절함을 밝히고 있다. 즉, 수입자의

채무인정을 발효요건으로 하거나, 적어도 수입자 앞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인도증빙(proof of delivery)이 있는 경우에 한해 매입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수출이행 확인의 방법으로는 중복매입 방지를 위한 관세청과 은행 간 'O/A결제 시스템'의 도입과 '블록체인(Blockchain)기술 기반 무역금융 대출시스템'의 도입이 바람직함을 주장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현재 금융성 수출보험 품목인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과 단기수출보험(EFF)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은 물론 경미한 과실까지도 예외 없이 면책하는 엄격한 보험자 '면책사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계약자에게 엄격한 '보험자 면책조항'의 존재 의미는 무역금융 대출취급은행이 신용보증부 무역금융 대출 시 무역금융 규정 혹은 신용보증약관이나 특약상의 각종 요건을 한국 은행 '적정용자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따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예외 없이 엄격한 '보험자 면책조항'은 당초의 무역금융 목적에 충실하고 적정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간접적 강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조그마한 과실까지도 무역보험공사가 면책처분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엄격한 면책조항은 속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보험계약자의 고의·과실이나 연속수출에서 면책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고의·과실 중 허위수출이나 수출대금 편취 등과 같은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상에 구체적으로 면책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인근 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해당 신용공여기관(ECA)의 면책조항을 살펴보면 향후 우리나라 무역보험공사의 면책조항 개선방안 모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보험약관 상에 주요 면책사유와 함께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의 의무와 면책에 관한 사항'을 상품설명과 약관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시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사기나 파산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험자 면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신용장방식의 O/A거래에서는 포괄계약이라는 계약특성상 허위수출채권 매입으로 인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역보험공사 자체의 신용조사 기능의 대폭적 강화와 함께, O/A 수출채권 매입은행의 절차적 주의의무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보험약관상 은행의 절차적 주의의무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무역금융 사기대출과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구종순·허은숙, 무역대금결제론, 박영사, 2014.
- 김병학·홍길중,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수출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 김용재, “무역보험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을 악용한 사기예방방안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 김재성·임성철, “국제 무역거래에서 블록체인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7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7. 8.
- 라공우, “무역보험의 수출신용보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 박광서·박은옥, 표준 무역실무, 한국무역협회, 2012.
- 박광서·황지현·주령커, “중소기업금융으로서 무역금융제도의 개선방안”, 무역상무연구 제7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7. 8.
- 박근서, “무역금융상 적정용자의 원칙 : 한국은행 무역금융규정과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 \_\_\_\_\_, “무역금융과 수출신용보증에 있어서 매입대출과 수출채권 매입”,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 박찬희, “모뉴엘 보험사기를 통해 본 전자무역의 정책적 시사점”, 전자무역연구 제13권 제4호, 중앙대학교 전자무역연구소, 2015.
- 서정호·이대기·최공필,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7.
- 심의섭 외, 수출보험의 이해, 세창출판사, 2009.
- 정홍주 외, 무역리스크관리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7.
- 채진익, “사례를 통한 무역금융제도상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1호, 한국관세학회, 2016.
- 최병규, “단기수출보험(EFF)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12.
- \_\_\_\_\_,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현상향과 제도개선방안”,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 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개정증보판, 2015.

-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면책사례집, 2009.
- 허은숙, “O/A방식 수출채권 매입은행의 서류검토의무 - 모뉴엘 사건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16권 4호, 한국관세학회, 2015.
- 황우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면책사례와 은행의 주의의무”, *Trade Insurance Magazine*, 2013 7+8.
- Grath Anders,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2nd ed., Kogan Page, 2012.
- Park, K., “Non-Documentary Sales Replacing Letters of Credit: Effe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Supply Chain, and Export Credit Insurance”,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SJD Dissertation*, 2011.
- Rizzo, Pete, “Barclays Completes Blockchain Trade Finance Transaction”, *Coindesk*, 2016.
- UniCredit, “Blockchain Technology and Applications from a Financial Perspective”, *Technical Report*, Version 1.0, 2016.

## ABSTRACT

### **A Study on the Methods for the Prevention of Fraud in Korean Export Insurance in the Context of Export Credit Guarantee Schemes under O/A Negotiation**

Seung-Lak PARK

This study explores how to prevent the fraudulent export financing and its subsequent export insurance fraud in relation to O/A negotiation. Under the traditional letter of credit(L/C) transactions, the banks, as a negotiation bank, can extend trade financing to the exporters through negotiation of draft and/or shipping documents. Under the O/A transaction scheme, however, bank cannot ascertain existence of trade performance and it is much riskier to extend an advance financing to the exporters before the buyer sends confirmation of debt. In O/A negotiation, some exporters tried to fraud banks by falsifying the shipping documents and the size and gravity of this fraudulent export financing were hug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banking process in O/A-based trade financing, documents examination process, the negotiation of instruments, treatment of trade financing in export credit guarantee, most importantly, explores what could be the criteria for appropriate treatment of account receivable to insure the safe transfer of account receivable.

To maximize the benefit for optimum trade financing, the Bank of Korea established several Trade Finance Rules (refers to "BOK Rules") requiring that commercial banks should maintain optimal credit limits(so called, 'the principle of optimal loan') to extend the trade finance. The K-sure post-shipment credit guarantee programs a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program(EFF)can also facilitate 'the principle of optimal loan' principle.

Keywords: O/A Negotiation, Transfer of Export Account Receivable, BOK Trade Finance Rules, Principle of Optimal Credit Limits, K-sure Post-shipment Credit Guarantee, Short-Term Export Insurance(EFF)